

이주노동자 정주화방지원칙에 대한 연구

이항수*, 이성훈**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행정학전공*,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Research on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Hyang-Soo Lee*, Seong-Hoon Le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요 약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 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 정주화방지 원칙, 고령화사회, 기술의 단절

Abstract As a multicultural society, is it right to adhere to the prevention principle of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We need to try to do a little more calm consideration on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rather than in terms of human right and emotional aspect. Even though there is a suggestion that we need to decrease the proportion of 3D Jobs by improving industrial demand, migrant workers can be an alternative in that we need a solution unless we can be freed from 3D Jobs.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not only is against the trend of multicultural society but also blocks the opportunity for migrant workers to share their skills and knowledge taught in our country. In addition, with the society aging, that the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can be proper channels to supply young labor force should be kept in mind. In addition to this practical aspect, considering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and with dignity and unequal conditions that migrant workers undergo require empathetic viewpoint, the prevention principle should be amended.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Migrant Workers,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Aging Society, Interruption of Technology

Received 2 March 2016, Revised 8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Seong-Hoon Lee

(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Email: lee.seonghoon@yahoo.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74만명을 넘어서 전체 우리나라 인구 대비 약 3.4%에 달하고 있다. 이를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11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로 충북(158만), 대전(153만), 광주(148만) 보다 많은 수준이다[1].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외국인주민이 늘어난 것은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2]. 1980년 이후 우리내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일자리들이 외면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3D업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산업연수생의 활용이었으며, 이는 후에 고용허가제로 변화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은 3년 이내의 시간 내에서 근로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즉,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방지하기 위해 3년 이후에는 추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를 불허하는 정책이 과연 앞으로도 유효한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가지고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에의 이주노동자 유입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다. 둘째,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이주노동자 유입 및 현황

2.1 다문화사회의 도래

행정자치부의 2015년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수는 174만명1919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3.4%를 차지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6년(54만명) 이후 연평균 14.4% 늘어났다. 이는 주민등록 인구 증가율 0.6%의 25배에 해당한다. 외국인 주민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90만명(52%)으로, 여성 84만명(48%)보다 많다. 유형별로는 국적 미취득자가 138만명으로 전체의 79%나 되었다. 국적 취득자는 16만명(9.1%), 자녀는 21만명(11.9%)이었다. 국적 미취득자 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61만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 국적동포 29만명(16%), 결혼이민자 15만명(9%), 유학생 8만명(5%) 순이었다[3]. 한국의 국제결혼율은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11%를 넘어섰고, 특히 농촌의 국제결혼은 35%를 넘어섰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함평, 보은, 임실, 단양은 40%를 넘어섰다. 이제는 다문화 또는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범람하며 하나의 문화코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서구처럼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4].

또한 한국의 노동시장은 1980년대 후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위 3D업종의 일자리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일자리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정부에서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5, 6].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편법활용, 사업체 이탈,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편법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한국정부는 연수생 도입규모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양산하는 주요 이유가 되었다[7].

2.2 이주노동자 유입 및 취업현황

1980년대 후반 정부는 외국 인력을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하였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경영계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계속 지연되자 정부는 2000년 4월부터 연수 취업제를 시행하여 산업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생으로 근무한 후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이후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

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04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에 이른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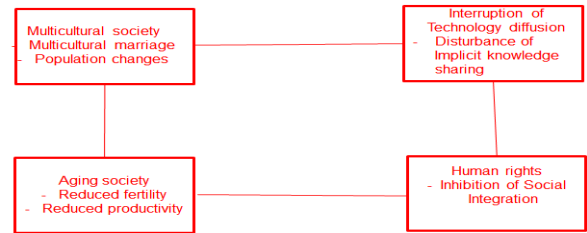
우리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정책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이주노동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보완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의 일자리는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직종에 한하여 허락한다는 것이다[8]. 우리나라 근로자들로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한해 외국인 이주근로자들로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9, 10]. 둘째, 이주노동자의 인구유입으로 국내 산업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산업구조조정 방해방지 원칙’이다. 즉, 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국내산업의 경우 3D업종인 경우가 많으며 우리 사회 내에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자칫 이주노동자의 유입이나 그 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이는 경쟁력 없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막자는 것이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 정주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주화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므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원칙 중에서도 특히 정주화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논의

3.1 연구 분석틀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주화방지 원칙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 하므로서 우리사회가 지불하게 될 비용은 향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우리사회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냉철히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에 의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사회의 다문화경향으로 인한 인구변화로 인해 정주화방지를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실익이 없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3년동안 익힌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공유되지 못하고 단절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령화사회로 진전되면서 우리는 출산율이나 국가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주화방지를 고수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권측면에서도 정주화방지가 유효하지 않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Fig. 1] Framework for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3.2 정주화 방지 원칙의 의의

정주화방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체류 시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체류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남아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배척하는 문화가 남아있다. 또한 예로부터 “순수단일민족”,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한겨레” 등에 익숙해져 있으며 단일민족국가임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타민족이나 타 인종, 타 국가의 이주민에 매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사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주민의 정주화는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즉,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복지비용이나 근로여건이나 임금 등에서 내국인들과 차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운영의 차원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체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범죄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탈행위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3.3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반론

정주화방지 원칙은 단일민족의 강조,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쟁점들이 많다.

3.3.1 다문화 사회의 흐름과 배치

앞서 밝힌대로 우리나라의 국내 거주 외국인수는 174만명(2015년)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3.4%를 차지하면서 바야흐로 다문화사회가 도래하였다. 이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문화결혼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4년 현재 24,387건으로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한국남자와 이주여성의 결혼이 다문화 혼인의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남성과 한국 여자의 결혼은 24.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 인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은 결혼이주민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 2014년 현재 다문화가정에서의 출생아는 21,174명으로 2013년(21,290명)보다 116명(0.5%) 감소하였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현재 4.9%로 나타났다[11].

이렇듯 우리사회의 인구동태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를 앞세워 주장하는 것의 실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앞서 다문화문제를 이미 겪었던 미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및 배려가 그들 국가를 성숙한 다문화국가로서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가 진전되고 성숙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차이는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주화에 대한 진입을 높일수록 우리사회에 대한 충성심이 낮아지게 되고 양질의 노동력공급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인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진 상황에서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역차별적인 정책을 계속 고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보여 진다.

3.3.2 관련 기술의 단절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꺼리는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보통 3년의 기간 동안 해당분야

의 기술을 습득 하므로써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즉, 이들은 주로 명백지보다는 경험에 근거를 둔 암묵지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암묵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글이나 책과 같은 명백지의 전달이나 공유보다 훨씬 더 어렵다.

사실 몸으로 체득한 암묵지의 경우 다른 이들과 공유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단절되거나 사장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지게 된다. 더구나 이들은 3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술들을 전달하기가 어렵게 된다.

특히 정부가 강제추방의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들은 한국어 사용에 능숙하고 작업숙련도가 높아 생산현장에서 고용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용 대상이다. 한국정부가 이들을 모두 내쫓으려 하는 것은 국가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 그리고 낮은 단속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12].

3.3.3 고령화 사회

한국출산율은 현재 1.2명에 이르고 있으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선 2000년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노년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 공급의 감소와 내수화 부진을 유발하여 잠재 경제 성장율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머잖아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유치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7]. 더구나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 3년 이상 체류자를 무조건 퇴출하는 것은 기술의 전파 및 공유 측면에서도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3D업종의 종사자를 구하기가 향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도 특정업종의 경우 이민자들이 그 자리를 보완해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정주화 원칙의 고수는 고령화 사회와도 매우 배치되는 원칙이라고 보여 진다.

3.3.4 인권과의 배치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정주화방지를 고수하고 있으나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이주노동자의 수가 줄었는

가 ? 3년 이후에는 퇴출시키는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으나 전체 이주노동자 중에서 2015년 6월 30일 현재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212,596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1,757,261명 중 12.1%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87,340명) 13.5% 증가한 수치이다[13]. 불법체류자 연령별 현황은 아래와 같은 순이다.

<Table 1> Age Statistics of Illegal aliens

Age	%
under 19	46.7
20 - 29	38
30 - 39	34.1
40 - 49	32
50 - 59	30.3
more than 60	28.9

source :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Reports 2015. 06

위 연령별 불법이주자들의 현황표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19세 이하 청소년이 많고, 19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나면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20대의 젊은 이주노동자들(38%)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인 것이다 한참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20대의 젊은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14, 15, 16].

또한 정주화방지 원칙은 사람을 단지 노동력으로 보는 비인간적 원칙으로서, 통제 및 관리 중심에서 인권 존중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가 변환되려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에서도 비록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체류한 자들에게는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법제화하려고 있다. 이것이 통과되면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 중 30~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데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도 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장기 체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장기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한다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옳은 처사라고 본다 [17].

4. 결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바야흐로 다문화사회, 다문화국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전환점에 서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이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젊은 인구의 3D업종에의 인구조달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물론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우리사회는 이주노동자의 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3년 후에는 퇴출되어야 하는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오히려 불법체류자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수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주화방지는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훌륭한 채널이라는 것을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 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주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논

의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를 가짐에도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에는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함에 있어 발생하는 역기능에 실제 이주노동자 및 관련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본다.

REFERENCES

- [1]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5 Foreign Resident Survey Results”, 2015.
- [2] A. E. Chung & J. H. Chun, “A Study on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and Japa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10, pp.133-139, 2013.
- [3] Chosunilbo, 2015. 7. 5.
- [4] H. B. Lim·S. W. Lee, D. W. Kang, & M. Y. Kim, “A Study on the Traits of Multicultural Society of Rural Areas in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 16, No. 4, 2009.
- [5] B. J. Chu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0, No.11, pp.29-38, 2012.
- [6] C. J. Yoo, G. T. Kim, & S. H. Lim, “The Study on welfare service of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0, No. 5, pp.19-26, 2012.
- [7] K. S. Yoo,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Employment Permit System”,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1.
- [8] Y. H. Lee,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lectoral Eligibility for Permanent Alien Resid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3, pp.13-22, 2013.
- [9] J. W. Oh & I. S. Park, “Verification Effect of Family Resilience Model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5, pp.355-377, 2013.
- [10] S. Y. Hong, “The Effect of Multi-cultural TV Program on the Viewers’ Perception of Migrant Women : Post Test Control Group Design Centered on University Students’ Viewing of the ‘Love in Asia’ Program”,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7, pp.19-26, 2013.
- [11]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4
- [12] Multicultural demographics, KNSO, 2015.
- [13] http://withmigrants.org/xe/data_01/28598
- [14]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Reports 2015. 06
- [15] S. W. Byun, “Difficulties of Health Behavior of the Migrant Inter-marriage Wome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2, pp.631-637, 2013.
- [16] H. J. Ko, “Language use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 case study of Korea”,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0, No. 10, pp.47-53, 2012.
- [17] Y. S. Moon, J. S. Han, & I. S. Park. “Transition in Life of Immigrant Women through Experience of Pregnancy and Deliver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0, No. 11, pp.477-484, 2012.
- [18] http://withmigrants.org/xe/data_01/28598
- [19] D. H. Seol, & J. D. Skrentny “South Korea: Importing Undocumented Workers.” Pp. 481-513 in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edited by Wayne A. Cornelius,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20] D. H. Seol, & J. D. Skrentny,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Vol. 9, No. 2, pp. 147-174, 2009.
- [21] D. H. Seol, & Y. J. Lee, “Recent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of Policies on Ethnic Return Migration in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Vol.20, No. 2, pp. 215-231, 2011.

이 향 수(Lee, Hyang Soo)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공인재대학 행정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지식관리,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이 성 훈(Lee, Seong Hoon)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문학사)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 2002년 9월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 2011년 3월 ~ 2016년 2월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공공경제, 지식자본, 생산성, 산업조직